

보 도 해 명 자 료('12. 6. 1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같은 제품 “두번 인증”...불편만 “두배로 가중”」
(‘12.6.11일자 전자신문 8면)

1. 기사내용

- 7월 1일 시행되는 전기안전·전자파 인증분리를 앞두고, 한 시험기관에서 모든 인증을 끝낼 수 있는 “원스톱 시스템” 도입이 시급
 - 27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술표준원이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원스톱 인증이 불가능
 - 공인시험기관에 두가지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전기안전은 다시 한 번 기술표준원 산하기관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지정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방통위의 IT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, 금년 7월1일 부터 지정부는 전기안전규제를 방통위는 전자파규제를 각각 담당할 예정
 - 이는 전기안전규제 관련 규정은 지정부가 만들고, 전자파 규제관련 규정은 방통위가 제정 한다는 의미임
 - 한편, 기업들이 직접 시험·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정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은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·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며,
 - 과거에는 품목별로 감독기관이 달랐으나, 향후에는 분야별로(안전규제 또는 전자파 규제)로 감독기관이 다르게 됨
- 따라서, 기업은 과거 이용해 오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전기안전 및 전자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음

※ 관련 문의 :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윤기환 과 장 (02-509-7242)
안광희 연구관(02-509-7243)